□ 자동차금융(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개인)				
「필수 기재 사항」※ 아래 필수 기재사항 작성만으로도	- 금융상품	이용 계약이	가능합니	다.	
1. 고객님의 정보를 작성해주세요.	ч	ΙΟΙΩΕΙΗΑ			
성명 영문명 *여권상 영문명과 동일하게 기재 국적		생년월일			
자택주소(실거주지)		자택전화		E-mail	
자택주소(주민등록지)		휴대폰 □SKT[□KT □LGU	<u> </u>	
청구서 □이메일 □휴대폰메시지 □미수령					
결제계좌 □하나은행 □기타()계3	작번호()*본인계좌아	∥ 한함
결제일 □1일 □7일 □13일 □17일 □21일 □]23일 □() 🗹	₫ 즉시출금	글	
※ 본인은 자동이체 약관에 대해 설명 듣고, 이해하였기에 제계좌를 통해 자동이체 및 즉시출금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정산 필요 시 고객 요청에 따라 실시간으로 출금하는 방법의	J합니다. (즉	시출금이란 연기	체금 및 중	사와 본인○ 도상환 등	개설한 결 고객과 대금
2. 대출의 용도 및 거래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대출용도 □ 개인용	- 🗆 개인	사업자용			
	□ 아니오				
*금융거래의 실소유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 특정 금융거래 제공 거절 시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보의 보고	1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룰에 의거 추	가 정보
3. 사업자 정보를 기재해 주세요(개인사업자용 선택시	필수 기재)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년	¹ 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형태	□소유 □	□ 임대		
사업장 주소					
*대출용도가 사업자용인 경우 사업자 정보 기재 및 사업자 제공,활용 동의는 필수사항으로 미동의시 개인용 대출로				나. 또한, 기	업 신용정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확인사항					
아래의 정보 수집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적합한 구매권유 상품설명 강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귀하가 아래의 정보 다 우선하여 설명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제공에 동의	하시면 상품에	대한 불이	익 사항을	다른 정보보
□추가설명 원함(□65세이상 고령층 □욘퇴자 □주투	ᅽ □기타)	□추가	설명 원	하지 않음	
4.대출 가늉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를 기재해 주세요					
직장명	부서명			직위	
직장주소	직장전화				
근속기간(사업기간)	연소득		만원		
「선택 × 급여소득(직장)을 기준으로 대출받으시는 경우	작성				
기재 사항」※금융상품 이용 계약 체결에 필수적 기재사항				–	
정확한 한도 및 금리산정 등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입니다.(신용평	<u> 3점 기점요인</u> .	으도 욀용되어 인	[노기 성상	<u> </u>	.)
고용형태 □정규 □계약 □파견 □기타(<i>)</i>				
주요소득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사소늑	□연금소득	□기탁		_
			20 년	<u> </u> 월	일
		+101 (1 16 t)		_	

□ 자동차	□ 자동차금융(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법인)								
「필수 기재 사	항」※ 아래 필수 기	기재사항 작성민	<u></u> 으로도 금융	상품 이	용 계익	취 가능힘	납니다.		
1. 고객님의 정	병보를 작성해주세요	١.							
	법인명(한글)				법인듕	록번호			
	법인명(영문)				사업자	등록번호		업종	5
법인정보	사업장 주소			•				•	
	설립목적(비영리법	[인일 경우)							
	직장전화		FAX			E-mail			
	• ' '	일 □휴대폰머		-					
청구 및	*청구서를 휴대폰메시					송됩니다.			
결제정보	결제계좌 □하∟) 계좌번)
	결제일 □1일	□7일 □13일	□17일 □	21일 🗆]23일	□(<u>+</u>		☑ 즉시출	<u> </u>
대표자	성명(외국인일경우 영문	문명) 주단	민듕록번호			휴대폰번 □SKT □K1		ၞ	·적
※본인은 자동이	I 체 약관에 대해 설명		기에 상기와	같이 자동	 동이체를				H설한 결
	· ·· · - · · · · · · · - · · · · · · ·				_				
정산 필요 시 그	1객 요청에 따라 실시	간으로 출금하는	- 방법으로 🌣	나은행계	좌만 해	l당됩니다.)			
2. 법인업무 당	남당자를 기재해 주시	네요							
성명	<u> </u>	 부서/직위		전화	<u></u> 번호			FAX	
	<u> </u> 1보의 보고 및 이용 ·		따라 보인 및			하는 정보9	<u> </u> 임니다		
					-11 1 🗖	-10 020	- 1 1.		
「선택 기재 사	항」※ 대리인 신청	시 필수로 작성	j하여야 합L	l다.					
성명		생년월일			부서/	/직위			
자택주소						폰번호			
					□SKT	□KT □LGU	J+		
E-mail		직장전화		FAX	•			국적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연대보	<u>!</u> 중인			(<i>\</i>	l명/인)

□ 자동차금융(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남대문세무서장 후납슝인 2014년 11호

대출금액 구간별 인지세 ·5천만원 이하 : 면제 ·1억원 이하 : 7만원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1.고객님의 차량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제조사	차량/모델	차량가격	금	원(₩)
차량번호	연식	차대번호		인도일자

2.고객님의 상품조건을 선택해주세요

	□ 오토할부				오토론		
유형	※'오토할부' 상품은 특	별한도 부여된 본업	인명의의 신	용카드로 차량	∱ 대금 일시불	결제 후 자동으로 할	할부금용으로 전
	환되는 상품입니다.	016					
한도	총 대출금액 금	원(₩)				
선입금	선입금여부 □있ఓ	금 □없음	선입금			원 선입금율()%
	정상대출원금 금	원(₩)	금리 %	기간 개월	□원리금균등상환 일시 □기타	만 □원금만기
상환 방법	거치대출원금 금	원(₩)	금리 %	기간 개월	□()개월 거치후(원리금균등분할 [~]	
	기타대출원금 금	원(₩)	금리 %	기간 개월	□원리금균등상환 일시 □기타	한 □원금만기
중도상 환수수	만기1년 이상	잔존기간/(다	출기간-3	80일)		상환수수료율 - ' 간'욜 30일로 건	
료	만기1년 미만					간/(대출기간-3 간'을 30일로 긴	
지연배 상금율	()%. 지연배상금 *연체 발생 시점에 약 1.상법 제54조에 따른 2.한국은행법 제86조 리(신규취급액 기준)	[‡] 정이율이 없는 [≧] 상사법정 이율 에 따라 한국은	경우 다음 행에서 매월	각호에 해당 날표하는	하는 금리 중	눈 높은 금리를 약정	
실질 이자 율	연 %	월납입금	ļ	원	총납입금	글	원
인지세	인지세 원	고객부	남인지세	원	인지세는 담	당사와 고객이	각 50%씩 부
	□예	□아니오		근자	1당설정금액		원
		□자동차근저	 당	□연대보증	F인 ()명		
근저당 설정	[개인고객 및 법인고객 중 대표자가 직접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개인 및 대표자는 상기 근저당설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법인고객 중 담당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담당자는 상기 근저당설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표자로부터 적법하게 수권을 받아 그 동의하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차량광동명의 경우 근저당설정 제휴업체에서 광동명의인 정보 확인을 위하여 대출신청인(본인)에게 연락할 경우 광동명의인 정보를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3.연대보증인 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입보유형	※연대보증인의 입보가 가능한 경우 차주가 개인사업자일 때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상 공동대표 차주가 법인일 때(1인)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포함 과점/대주주(30% 이상) □대표이사(고용임원제외)□무한책임사원 자동차구입일 때 □장애인의 차량구입시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 □영업목적 차량구입 기 타 □상기 외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 제4호, 제5호에 해당					
		□특정근보중 □한정·	근보즁			
보즁인	성명	생년월일		국적	휴대폰	
정보	자택주소				자택전화	
	직장명	부서	직급		근속년수	년
	직장주소				직장전화	
	관계 신청인의() 재산서		반원/년 연소	노득	만원
보중사항	보중채무최고액	원		보즁기간		개월
	※총대출금액의 130%입	니다(단,영업을 위한	<u> </u>	, 장애인이 기	자동차 구입시	100%)

- ●대출신청인(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상기 대출신청 내용(대출조건/보증조건 및 세부규정)과 약정서 약관 내용(자동이체 약관 포함)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약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제출하신 서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 후 폐기되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합니다. 다만,고객이 사전에 반환 요청을 한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 ●본인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에 근거하여 하나금융그룹내 지주사 및 자회사간에는 고객 정보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것과 고객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둥 취급방침을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특정금융거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 시 고객께서는 고객확인을 위한 신원정보 및 관련자료를 제공하셔야 하며, 제공하신 정보는 동법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기재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문서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된 정보 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충분히 수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 의한 금융거래시에는 본인(명의인)과 대리인의 정보를 함께 기재하셔야 합니다.금융기관에서 파악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외부에 제공되지 않으며, 고객의 정보는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만 관리하고, '금융실명법' 및 '신용정보법' 등에 의해 금융기관 임직원이 이를 누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4. 할부거래법상 철회·항변권 적용여부 설명

당사의 오토할부상품은 할부거래법상 철회 항변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가 제한되는 할부금융거래
 -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거래
 -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공급을 받는 거래
 - -할부거래법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재화·용역에 대한 거래(농·수·축산물 및 임광산물로서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것, 의약품,보험, 중권 및 어음, 부동산 등)
- □철회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당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자동차, 선박 등)
 -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 자재 등이 요구되는 경우(냉동기, 전기냉방기 등)
 -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연대보증인 (서명/인)

할부금융이용자는[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판매자	판매점명: 판매점주소 :	판매자:	(인)	본인확인	Ht 7 7 7 7 6	\
판매제휴점	본인은 상기 계약조건과 도 사실을 확인하고, 신 대면하여 자필서명 하였	청인 및 연대	^{넏즁인을}	□주민등록중(발급일자: □운전면허중(면허중번호: 본인확인자 :	발급기관: 서명/인)

대출금 지급 및 수령 위임신청서

1. 대출금 지급 및 수령 위임에 관한 동의

본인은 차량 구매를 위해 귀사에 신청한 대출금을 매도인(판매회사) 또는 그 대리점 및 제휴사에게 수령할 권한을 위임하는 동시에 아래의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이 요청에 따라 귀사가 해당 대출금을 송금하여 입금된 시점에 대출 신청인 겸 계약자가 수령한 것으로 간주됨을 확약합니다. 만일 대출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 귀사가 본인을 대신하여 대출금을 환불 받아 원상회복 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 요청에 따라 귀사에게 대출금이 반환되는 시점에 해당 대출금이 대출 신청인 겸 계약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간주됨을 확약합니다.

[수임인]

성명(상호)	
은행명	계좌번호
위임 지급액	

2. 유예/거치대출 상품 만기 연장에 관한 동의(원금만기일시 상환 선택 시 작성해 주세요)

본인은 약정 **대출**기간 만기 시, 기한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 연장 가능여부, 연장금리, 연장기한, 보증인 입보조건 등의 연장 조건은 본인의 대출금 상환내역(연체이력 포함) 및 연장시점의 금융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최초 대출조건과 다를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법인 또는 단체의 실제소유자 확인서

본 확인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확인)'에 의하여 작성이 요구되는 필수 서식입니다. 작성하신 정보는 관련 법령에 의거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실제 소유자 확인

구분	선택	내 용			
		① 25% 이상 지분 소유자 중 최대 주주(지분율 : %)			
		② 위 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11711 1 0 71		1)최대주주(지분율: %)			
1.실제 소유자 확인대상		2) 대표자 또는 임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7 2 7 0		3) 위 1),2) 외에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 위 ②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④ 확인 생략 대상			
2.실제 소유자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			
확인 생략 대상		2) 금융기관			
		3)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2 1111 1 0 11	성명(한	글)			
3.실제 소유자 정보	성명(영문) 여권의 영문명 기재				
0-1	생년월일	고 국적 외국인의 경우 필수 기재			
4 자선이 정 H	법인명				
4.작성인 정보 (고객사 작성)	직책				
(= 11 10)	성 명	서명/인			

개인(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서

본 확인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에 의하여 작성이 요구되는 필수 서식입니다. 작성하신 정보는 관련 법령에 의거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 계약자와 실제 소유자(금융거래를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가 다른 경우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실제 소유자 확인

계약자 본인이 실제 소유자입니까?	□예	□아닉오
실제 소유자 정보	성명(한글)	
	성명(영문)	
	생년월일	
	국적	외국인의 경우 기재 필수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

귀하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조회 및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조회 및 제공에 관한 동의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에 필수적이거나, 상거래관계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 개선, 신청 상품 서비스 제공, 법령상 의무이행, 신용질서 문란행위 조사, 분쟁처리, 전화상담 업무, 민원처리, 본인 여부 확인
보유 및 이용기간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 (단,다른관련법령에해당하는경우해당법령상의보존기간을따름)
	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회원탈회 또는 채권·채무 관계가 소멸된 날"을 말한다.

수집이용 항목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u>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u> 에 동의하십니까? 모동의함 모동의하지 않음				
🚢 개인(신용)정보					
L ☑ 일반개인정보	성명, 영문명, 연락처(휴대폰,자택,직장), 주소(자택,직장), e-mail주소, 직장명, 직종, 부서명, 직위, 성별, 국적, 음성data, CI, 아이핀번호, 결제대금 출금자동이체 정보(예금주성명,생년월일,결제은행,계좌번호)				
└ ❷ 신용거래정보	여신성거래정보, 보험계약정보, 금융투자상품정보, 그 외 금융거래정보, 상거래정보				
∟ 📠 신용도판단정보	신용질서 문란정보, 연체정보				
∟ 🚹 신용능력정보	직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 정보				
ㄴ ◑ 광광정보 등	인적정보, 체납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공적장부 정보, 공공요금 납부정보, 주민등록 관련 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u>수집·이용</u> 에 동의하십니까? ㅁ동의함 ㅁ동의하지 않음				

2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사)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SC명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나이스디앤비(주),이크레더블(주)
조회 목적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당 사]의 조회 결과 귀하와의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종료일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당 사]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조회 항목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u>고유식별정보 조회</u> 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	성명, 영문명, 연락처(휴대폰,자택,직장), 주소 (자택,직장), 직위, 성별, 국적, 음성data, CI, 아이핀번호	e-mail주소, 직장명, 직종, 부서명,
└ ☞ 신용거래정보	여신성거래정보, 보험계약정보, 금융투자상품정보, 그 외 금융거래정보, 상거래정보	
∟ •• 신용도판단정보	신용질서 문란정보, 연체정보	
∟ 🔓 신용능력정보	직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 정보	
└ ① 공공정보 등	인적정보, 체납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공적장부 정보, 공공요금 납부정보, 주민등록 관련 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u>조회</u> 에 동의하십니까?	ㅁ동의함 ㅁ동의하지 않음

3 제공에 관한 사항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제공받는 자	송압신용성보십중기관 : (사)한국신용성보원 신용정보회사 : 나이스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업무수행본인의신용판단및본인확인등법령에서정한신용정보회사의업무수행

제공 항목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u>고유식별정보 제공</u> 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신용)정보		
└ ■ 일반개인정보	성명, 영문명, 연락처(휴대폰,자택,직장), 주소 (자택,직장) 직위, 성별, 국적, 음성data, Cl	, e-mail주소, 직장명, 직종, 부서명,
└ ❷ 신용거래정보	여신성거래정보, 그 외 금융거래정보, 상거래정보	
ㄴ ♬ 신용도판단정보	신용질서 문란정보, 연체정보	
∟ 🔒 신용능력정보	직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 정보	
⋾ 공공정보 등	채무조정정보, 주민등록 관련 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u>제공</u> 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여신금융협회 등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2) 역신금융엽외 등에 개인(신용)성보 세상		
제공받는 자	협회 : 여신금융협회 국가기관 :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 건강보험공단, 기타 법령상 업무수행기관	
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 금용 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법령상 의무 이행	
보유 및 이용기간	본 기관이 준수하여야하는 관련 법령의 보존기간을 따름	

제공 항목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u>고유식별정보 제공</u> 에 동의하십니까?	ㅁ동의함 ㅁ동의하지 않음
♣ 개인(신용)정보		
L ■일반개인정보	성명, 영문명, 연락처(휴대폰,자택,직장), 주소 (자택,직장) 직위, 성별, 국적, 음성data, Cl	, e-mail주소, 직장명, 직종, 부서명,
ㄴ ❷ 신용거래정보	여신성거래정보, 그 외 금융거래정보, 상거래정보	
∟ •• 신용도판단정보	신용질서 문란정보, 연체정보	
∟ 🔒 신용능력정보	직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 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u>제공</u> 에 동의하십니까?	ㅁ동의함 ㅁ동의하지 않음

[※] 신용도 등의 평가목적 외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의 경우 당사 홈페이지 및 고객 센터(1800-1221)를 통해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



- ※ 위 등급은 시생활 침해 위험, 혜택,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내용의 평가등급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자세한 등급 안내:1800-1221)
- (1) 카드·금융상품 안내 및 이용권유를 위한 수집,이용

수집·이용 목적	경품지급, 사은행사 등 고객의 편의 제공 시장조사 및 상품·서비스 연구개발 당사 및 제휴사 상품·서비스 안내 및 이용권유[하나비씨카드의 경우 비씨카드(주) 포함]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안내 및 이용 권유
보유 및 이용기간	거래 종료일 또는 동의 철회시까지
	위보유기간에서의거래종료일이란회원탈회또는채권채무관계가소멸된날을말한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아래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카드·금용상품과 관련된 신상품(서비스)소개, 편의 제공(사은품,할인쿠폰,무이자할부 등), 안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항목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u>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u> 에 동의하십니까?	ㅁ동의함 않 음	마동의하지
♣ 개인(신용)정보			
L ≥ 일반개인정보	일반식별정보, 거주정보, 직장정보, 가족정보, 기타개인정보		
ㄴ ❷ 신용거래정보	여신성거래정보, 보험계약정보, 금융투자상품정보, 그 외 금융거래정보, ⁴	상거래정보	
ㄴ ••• 신용도판단정보	신용질서 문란정보, 연체정보		
∟ 🔒 신용능력정보	직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 정보		
ㄴ ◑ 공공정보 등	인적정보, 체납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공적장부 정보, 공공의 주민등록 관련 정보	요금 납부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u>수집·이용</u> 에 보통 동의하십니까?	ㅁ동의함 않 음	마동의하지

(2) 카드·금융상품 이외의 부수서비스 안내 등을 위한 수집,이용

수집·이용 목적	여행, 통신판매 등 신용카드 회사의 부수업무와 관련된 마케팅 활동 당사가 보험 대리점 자격으로 행하는 위탁 보험상품 소개, 판매, 보험 서비스 제공 및 활용	
보유 및 이용기간	거래 종료일 또는 동의 철회시까지	
	위보유기간에서의(금융)거래종료일이란회원탈회또는채권채무관계가소멸된날을말한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부수업무(여행,통신판매,보험 등)와 관련된 신상품(서비스)소개, 안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집 이용 항목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	위 <u>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u> 에 동의하십니까? 다동의함 않음	□ 동 의하지
┸ 개인(신용)정보		
ㄴ ■ 일반개인정보	일반식별정보, 거주정보, 직장정보, 가족정보, 기타개인정보	
└ ☞ 신용거래정보	여신성거래정보, 보험계약정보, 금융투자상품정보, 그 외 금융거래정보, 상거래정보	
└ • 1 신용도판단정보	신용질서 문란정보, 연체정보	
∟ 🔒 신용능력정보	직업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채무정보, 납세실적 정보	
ㄴ 🛈 광광정보 등	인적정보, 체납정보, 채무조정정보, 개인신용평점, 공적장부 정보, 공공요금 납부정보 주민등록 관련 정보	<u>i</u> ,
	위 개인신용정보 <u>수집·이용</u> 에 <u>보통</u> 미동의함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하지
	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고등의함 의하시겠습니까? 않음	고 동의하지
전체 ㅁ	문자 ㅁ 이메일 ㅁ 전화 ㅁ	우편 □

※카드·금융상품과 부수서비스 및 이용권유에 동의하셨더라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권 유 목적의 연락에 대한중단을 언제라도카드사또는 여신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1800-1221/홈페이지: www.hanacard.co.kr)

※ 상기 이용권유 동의는 하나멤버스 신규가입에 한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표전화:1800-0000/홈페이지:www.hanamembership.com)

※ 갱신 및 상품서비스 변경 안내 등 필수 고지사항은 상기 동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심 다소안심 보통

신중

주의

※ 위 등급은 사생활 침해 위험, 혜택,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내용의 평가등급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등급 안내:1800-1221)

(1) 하나금융그룹 내 계열사에 제공

제공받는 자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캐피탈㈜, 하나생명보험㈜, 하나손해보험㈜, ㈜하나저축은행, ㈜핀크
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안내 및 이용 권유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신용)정보 동의일로부터 2년 또는 동의철회 시까지 보유·이용되며 이후에는 관련된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본 동의는 계약 체결에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의 상품서비스 안내 및 권유를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공 항목

♣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직장명, 직급, 국적, 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 Cl ※ Cl: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암호화된 key값
└ ❷ 신용거래정보	대출상품명, 대출잔액, 대출이자율, 대출시작일
ㄴ ♬️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 정보, 대지급 정보
∟ 🚹 신용능력정보	재산정보, 소득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u>제공</u> 에 동의하십니까? 신중 고동의하지 않음 고동의함

상품서비스 안내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동의 하시 겠습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 의함

동의 대상 회사	전체 동의 ㅁ (주)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주) □ 하나캐피탈(주) □ 하나생명보험(주) □ 하나손해보험(주) □ (주)하나저축은행 □ (주)핀크 □
매체	① ~ ④ 전체 ㅁ ①문자메시지(SMS,LMS,모바일메시지 듕) ㅁ ②전화 ㅁ ③전자우편(이메일) ㅁ ④우편,택배 듕 ㅁ

[※] 선택한 전자적 전송매체에 대해서 모든 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의 동의한 회사에서 고객님께서 선택한 안내수단으로 연락할 수 있습 니다.

[※] 신용도 등의 평가목적 외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의 경우 당사 홈페이지 및 고객 센터(1800-1221)를 통해 언제든지 철회 가능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해 그룹사간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중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중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중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 2. 예탁한 중권의 총액
 - 3. 예탁한 즁권의 종류별 총액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이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은 하나금융지주를 중심으로 고객정보를 그룹사간에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정보취급방침」을 제정·우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공처를 한정하고,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중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 가. 예탁한 금전의 총액
 - 나. 예탁한 즁권의 총액
 - 다.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라. 채무즁권의 종류별 총액
 - 마. 수익 중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 바. 예탁한 즁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즁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Ⅱ. 고객정보의 제공처

하나금융그룹 중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하나금융지주(금융지주회사), 하나온행(은행업), 하나금융투자(금융투자업), 하나카드(신용카드업), 하나캐피탈(할부금융 및 시설대여업), 하나생명보험(생명보험업), 하나손해보험(손해보험업), 하나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업), 하나자산신탁(신탁업), 하나에프앤아이(NPL 투자관리업), 하나금융티아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핀크(그 외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입니다.

Ⅲ.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하나금융그룹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룹사간 정보 제공 및 이용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①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② 그룹사의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 ③ 그룹사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 ④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고객정보관리인등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⑤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 고객정보관리인에게 총괄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⑥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제·개정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공지 의무에 최선을다할 것입니다.
- ⑦ 그룹사간 고객정보 제공 내역을 각 그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정보이용에 대한 고객의 조회가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정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수행할 소관부서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⑨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 고객정보의 송•수신,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침입 등 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금융지주	고객정보관리인	·하나은행 고객정보관리인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투자	고객정보관리인	·하나카드 고객정보관리인
	·하나캐피탈	고객정보관리인	·하나생명보험 고객정보관리인
	·하나손해보험	고객정보관리인	·하나저축은행 고객정보관리인
	·하나자산신탁	고객정보관리인	·하나에프앤아이 고객정보관리인
	·하나금융티아이	고객정보관리인	·핀크 고객정보관리인

고객권리안내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해 보장된 고객님의 권리를 안내 드립니다.

●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으로만 이용 됩니다. 고객은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 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 신용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5 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타금융회사 등 제 3 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 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신청방법: ① 당사 영업점 ② 고객센터: 1800-11111

●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정보의 제3자앞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7 조에 따라 가입 신청 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수 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 ① 당사 영업점 ② 고객센터 : 1800-1111

제한: 중단 신청시에는 카드업무 등 관련 금융상품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8 조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 ① 당사 영업점 ② 고객센터 : 1800-1111

● 본인 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9 조에 본인 정보를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정보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코리아크레딧뷰로(주) 02-708-1000 (www.allcredit.co.kr)/NICE 평가정보(주) 1588-2486/

(www.credit.co.kr), SCI 평가정보(주) 1577-1006 (www.siren24.com)

● 개인정보 유출피해 보상요구권

하나카드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카드: 1800-1111 (서울 중구 을지로 66)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서울 중구 다동길 43 한외빌딩 13 층)

금융감독원: 1332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하나카드 자동차금융] 저당권 설정 등록 신청서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번호:	욜부번호:	
거다기다.	성명 또는 명칭	하나카드주식회사 대표이사 권길주		
저당권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 2가)		
자동차/건설기계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	주소			
채무자	성명 또는 명칭			
^II T^I	주소			
피담보채권가액 (저당권설정가액)			변제기한 : 별도약정	
이 자 액	변 ㄷ 야저		이자지급일 : 별도약정	
이 시 책	별도약정		이자발생일 :	
조건 또는 약정				
광동자동차 대 수 (건설기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 2가) 성명(명칭):하나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 길 주 (인) 사업자등록번호 104-86-56659 법인등록번호 110111-5505354

#구비서류

- 1. 자동차,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 1부
- 2.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 3.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1부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처리기간 : 즉시

수수료:

■저당권자는 채무의 변제가 완료된 때 등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저당권의 이전등록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권자에게 저당권의 말소 등록 또는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하나카드 자동차금융] 저당권 설정 신청 위임장

위 임 장

수임자	주 소:	
	성 명:	
	주민듕록번호:	전화번호

상기인에게 아래 목록 기재(자동차, 건설기계)의 근저당권 설정 등록 신청에 관하여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율지로 66(율지로 2가)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상 호: 하나카드 주식회사	
	성 명:대표이사 권 길 주(인)	
	주 소: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	
	성 명(상호)	(서명/인)
	주 소:	
근저당권 설정자 l	주민듕록번호 :	
	성 명(상호)	(서명/인)
	주 소:	
근저당권 설정자॥	주민듕록번호 :	
	성 명(상호)	(서명/인)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지로 2가)	
신청인	상 호: 하나카드 주식회사	
	성 명:대표이사 권 길 주(인)	

저당물건의 목록

저당물건명	형식	차대번호	원동기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하나카드 보관용

재권자겸 근저당권자	아나카드 수식회사(이아 회사라 정한다)	
근저당권 설정자 _	(이하 소유자라 칭한다)	
채무자 _	(이하 채무자라 칭한다)	
채권최고액 급	금원정 (₩)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본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및 효력범위

- ① 소유자는 채무자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또는 부담할 다음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소유가 된 또는 소유가 될 말미목록 기재한 물건(이하"저당물건")에 순위 제1번 채권 최고금액 ______원정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 1. 채무자가 회사와 체결한 주계약(년 월 일 체결)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부대채무 포함)
- ② 근저당권의 효력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및 그 이후에 수리, 정비, 구조변경 또는 개조,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본 근저당물건의 부합물 및 종물에도 미친다.
- ③ 근저당물건의 실제가 본 계약서 끝부분 목록 란의 기재나 공부상 기재와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더라도 본 근저당권은 실제 물건 위에 그 효력이 미치며 회사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소유자는 곧 변경둥기나 경정둥기 둥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제 2조 담보보존의무

- ① 소유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 훼손 등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형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근저당권 보존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소유자는 근저당 물건에 관하여 임대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체결 해제 변경이나 갱신 또는 자동차(중장비)등록원부의 등록 사항의 이동 기타 현상을 변경코자 할 때는 사전에 회사의 서면 승낙을 얻는다.
- ③ 저당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의 사고 또는 현저한 가격 하락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에는 소유자와 채무자는 이러한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소유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할 배상금, 보상금 등의 채권이 발생한 때에는 소유자는 그 채권을 회사에 양도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으며,회사는 그 수령금으로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한다.

제3조 저당물의 보충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건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채권보전을 위한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근저당권의 실행 및 근저당물건의 처분 관리

① 근저당물건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가 동의를 한 때에는 회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을 채무자에게 알리고 처분한 후 그 취득금에서 근저당권 실행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뺀 잔액을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6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저당물건의 처분방법, 시기, 가격, 처분대금의 채무변제 충당순위 및 방법 등은 회사와 채무자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회사가 경매에 의하지 않고 저당물건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에 소유자는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력하여야 하고 근저당권 실행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③ 소유자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의 사유로 말미암아 근저당물건이 정상적으로 관리, 유지되지 아니하고 멸실 훼손 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근저당물건을 점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 제반 절차의 이행과 비용

- ① 회사가 본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록 및 기타 제절차를 요구할 때에는 채무자와 소유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전항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설명하기로 하는 바, 근저당권 설정, 변경, 이전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회사가, 근저당권 말소(해지)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
- ③ 회사가 저당물건의 실황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그 외 비용부담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비용은 회사와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균분한다.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근저당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 6조 저당물건의 실황조사 등에 대한 협조

회사가 저당물건의 실황조사나 처분 기타 필요에 의하여 저당물건의 인도나 주유를 요구할 때는 소유자는 즉시 이에 융하여야 한다.

제 7조 다른 담보 보증약정과의 관계

- ① 소유자가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같은 피담보 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본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된다.
- ②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소유자가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 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한다.
- 위 계약의 중거로 본 중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 이를 확인한다.

위 계약의 중거로 본 중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 이를 확인한다.

저당물건의 목록

저당물건명	형식	차대번호	원동기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년 월 일

채권자겸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율지로	. 66(을 지로 2가)	
근저당권자	상 호: 하나카드 주식회사	성	명 : 대표이사 권 길 주 (인)
채무자	주 소:		
	생년월일	성명(상호)	(서명/인)
근저당권	주 소:		
설정자 I	생년월일	성명(상호)	(서명/인)
근저당권 설정자॥	주 소:		
	생년월일	성명(상호)	(서명/인)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고객 보관용

채권자겸 근저당권지	ㅏ 하나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한다)
근저당권 설정자	(이하 소유자라 칭한다)
채무자 _	(이하 채무자라 칭한다)
채권최고액 급	금 원정(₩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본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및 효력범위

- ① 소유자는 채무자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또는 부담할 다음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자의 소유가 된 또는 소유가 될 말미목록 기재한 물건(이하"저당물건")에 순위 제1번 채권 최고금액 ______원정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 1. 채무자가 회사와 체결한 주계약(년 월 일 체결)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부대채무 포함)
- ② 근저당권의 효력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및 그 이후에 수리, 정비, 구조변경 또는 개조,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본 근저당물건의 부합물 및 종물에도 미친다.
- ③ 근저당물건의 실제가 본 계약서 끝부분 목록 란의 기재나 공부상 기재와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더라도 본 근저당권은 실제 물건 위에 그 효력이 미치며 회사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소유자는 곧 변경하기나 경정하기 등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제 2조 담보보존의무

- ① 소유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그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 훼손 등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형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근저당권 보존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소유자는 근저당 물건에 관하여 임대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체결 해제 변경이나 갱신 또는 자동차(중장비)등록원부의 등록 사항의 이동 기타 현상을 변경코자 할 때는 사전에 회사의 서면 슝낙을 얻는다.
- ③ 저당물건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의 사고 또는 현저한 가격 하락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에는 소유자와 채무자는 이러한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소유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할 배상금, 보상금 등의 채권이 발생한 때에는 소유자는 그 채권을 회사에 양도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으며,회사는 그 수령금으로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한다.

제3조 저당물의 보충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건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소유자는 채권보전을 위한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근저당권의 실행 및 근저당물건의 처분 관리

④ 근저당물건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가 동의를 한 때에는 회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을 채무자에게 알리고 처분한 후 그 취득금에서 근저당권 실행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뺀 잔액을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6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다. ⑤ 전항에 의한 저당물건의 처분방법, 시기, 가격, 처분대금의 채무변제 충당순위 및 방법 등은 회사와 채무자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회사가 경매에 의하지 않고 저당물건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에 소유자는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협력하여야 하고 근저당권 실행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⑥ 소유자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의 사유로 말미암아 근저당물건이 정상적으로 관리, 유지되지 아니하고 멸실 훼손 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근저당물건을 점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 제반 절차의 이행과 비용

- ① 회사가 본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록 및 기타 제절차를 요구할 때에는 채무자와 소유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전항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설명하기로 하는 바, 근저당권 설정, 변경, 이전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회사가, 근저당권 말소(해지)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
- ③ 회사가 저당물건의 실황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그 외 비용부담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비용은 회사와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균분한다.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근저당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 6조 저당물건의 실황조사 등에 대한 협조

회사가 저당물건의 실황조사나 처분 기타 필요에 의하여 저당물건의 인도나 주유를 요구할 때는 소유자는 즉시 이에 유하여야 한다.

제 7조 다른 담보 보증약정과의 관계

- ① 소유자가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같은 피담보 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본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된다.
- ②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소유자가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 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한다.
- 위 계약의 중거로 본 중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 이를 확인한다.

위 계약의 즁거로 본 중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 이를 확인한다.

저당물건의 목록

저당물건명	형식	차대번호	원동기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년 월 일

채권자겸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율지료	르 66(을 지로 2가)		
근저당권자	상 호:하나카드 주식회사		성	명:대표이사 권 길 주(인)
채무자	주 소:			_
	생년월일	성명(상호)		(서명/인)
근저당권	주 소:			
설정자 I	생년월일	성명(상호)		(서명/인)
근저당권 설정자॥	주 소:			
	생년월일	성명(상호)		(서명/인)

자동차 할부금융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하나카드 주식회사(이하"하나카드"라 합니다)와 자동 차를 매수하면서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간의 할부금융 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할부금융"이라 함은 하나카드가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채무자와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채무자에게 대출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 받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합니다.
 - 2. "할부금융자금"이라 함은 하나카드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을 의미합니다.
 - 3. "할부금"이라 함은 채무자가 하나카드에 상환하여야 할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 및 이자액의 총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정서 필수기재사항)

할부금융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 1. 매도인 채무자 및 하나카드의 성명 및 주소
- 2. 대상물건의 세부내용 및 인도 등의 시기
- 3. 이자율, 연체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채무자가 부담하는 각종 요율
- 4. 물건가격 및 할부금융자금
- 5. 월 할부금의 금액 및 지급횟수 및 시기
- 6.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율 등의 실제연간요율

제4조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하나카드는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 1. 하나카드가 정하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이 경우 각종 요율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채무자가 하나카드에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
- 2. 할부금의 변제방법

제5조 (할부금용의 신청 및 지급위탁계약)

채무자가 자동차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하나카드에게 할부금융을 신청하는 경우 하나카드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6조 (소유권행사의 제한)

채무자는 이 약정서상 기재된 할부금의 완제 시까지 하나카드의 슝낙 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초회납입 및 지연배상금)

- ① 채무자는 하나카드가 운영하는 결제일 중에 채무자가 선택하는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을 초회납입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매월 납부해야 할 할부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 ② 채무자가 월 할부금 등 하나카드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하나카드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③ 할부금융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할부금융자금 잔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8조 (기한이익의 상실)

- ①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하나카드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6조의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행위를 한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9조 (할부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① 채무자는 할부금융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 할부금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 할부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하나카드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제8조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하나카드가 기한전에 할부금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중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0조 (항변권)

-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카드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매도인과의 자동차 할부매매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2. 매도인이 자동차를 약정한 인도시기까지 채무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그 밖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지급거절을 항변함에 있어서는 하나카드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를 통지하기로 하며, 하나카드에 지급거절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 ③ 채무자는 제2항의 통지 이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기로 하며, 하나카드가 항변사유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니다.
- ④ 채무자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자동차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카드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 1.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중명·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 2.법령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 ② 인지세는 채무자와 하나카드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하나카드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갚기로 합니다.

제12조 (담보의 제공)

하나카드는 약정서상 채무자의 하나카드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하나카드가 제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제13조 (유효기간)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기명 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하나카드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제14조 (채권의 양도)

하나카드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하나카드의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자동이체 약관

제1조(청구금액의 출금)

신청인 및 예금주(이하 "회원"이라 합니다)는 하나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지정하는 계좌이체일(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한 은행 및 잔고보유 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이라 합니다)계좌(이하"지정계좌"라 합니다)에서 출금하여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2조(자동이체 처리절차)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 절차에 의하여 출금 (지정계좌가 대출 가능한 계좌인 경우 그 약정한도 내에서)처리되며, 금융기관의 출금마감시간 내에 입금된 금액(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하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제3조(지정계좌의 잔액부족시 출금)

카드사는 이용대금 결제일 현재 지정계좌의 잔액(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 부족으로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제일 이후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출금일에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2조의 방법에 따라 출금하여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4조(출금우선순위)

이체 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자동이체신청의 지정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5조(이의제기)

자동이체 납부의 신규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회사의 청구대로 출금하 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원과 회사가 혐의하여 조정하기로 합니다.

제6조(기타)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상관례,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에 따릅니다.

자동차 오토론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하나카드 주식회사(이하 "하나카드"라 합니다)와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이용하는 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 간의 대출 계약(이하 "오토론 약정"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대출조건)

채무자의 대출금, 이자, 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 조건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 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하나카드와 채무자 사이의 오토론 약정 에 따라 정하기로 하며, 하나카드는 이를 대출실행 이전에 채무자에게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3조 (대출의 실행)

- ① 오토론 약정에 의한 대출은 하나카드가 대출금을 채무자가 신청·지정한 대출금 지급계좌 (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자동이체 계좌로 합니다)에 입금함으로써 실행된 것으로 합니다.
- ② 하나카드는 대출금액, 만기, 대출금리 수준 등 대출실행내역(신규, 만기연장, 대환 등)을 SMS, 이메일, 우편 등 차주가 선택한 방법을 통해 채무자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카드는 대출금액에서 제6조 제2항에 따른 채무자부담의 인지세를 입금 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 ① 채무자는 제2조에서 정한 율에 의한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첫 회 납입일은 하나카드가 운영하는 결제일 중에 채무자가 선택하는 대출 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월납입 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 ②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하나카드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③ 제 2항의 '지연배상금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대출금리'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연체 발생시점에 대출금리가 없는 상품은 다음 각 목 중 높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 1.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 이율

- 2.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 ④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⑤ 하나카드는 개인신용대출의 만기 연장 시(대환 포함)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만기연장 전에 SMS, 이메일, 우편 등 채무자가 선택한 방법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5조 (금리인하 요구권)

- ① 제4조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하나카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오토론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 등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하나카드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6조 (비용의 부담)

-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카드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 1.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급하는 제중명·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 2.기타 법령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 ② 인지세는 채무자와 하나카드가 각 50%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③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7조 (기한이익의 상실)

- ①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가 본 조 제1항 이외에 대출금의 완제시까지 하나카드의 승낙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행위를 한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8조 (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① 채무자는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

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 (당월 대출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카드와 채무자 사이의 오토론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중가하여서는 아니되며,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하나카드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제9조 (결제방법)

- ① 하나카드는 청구한 금액을 결제일에 채무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이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채무자와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간의 별도 약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ex 마이너스 통장), 그 대출가능한도 내에서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출금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인출하여 결제합니다.
- ③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결제일 현재 잔액이 부족하여 청구대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담보의 제공)

하나카드는 오토론 약정서상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하나카드가 제시 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제11조 (기한연장)

수시상환식/원금유예식 자동차 오토론에 의한 기한연장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신청되며, 이 경우, 연장금리, 보중인 입보 조건 등의 연장조건은 채무자의 대출금 상호내역(연체이력 포함) 및 대외 신용도 변화에 따라 최초 대출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12조 (변경사항의 통지 의무)

- 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이 대출 약정서상의 기재사항(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카드에 즉시 변경사항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제1항의 통지를 게욜리하거나 오토론 약정서 상의 중요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하나카드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13조 (유효기간)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기명 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하나카드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제14조 (채권의 양도)

하나카드는 오토론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해석)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하나카드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자동이체 약관

제1조(청구금액의 출금)

신청인 및 예금주(이하 "회원"이라 합니다)는 하나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지정하는 계좌이체일(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한 은행 및 잔고보유 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이라 합니다)계좌(이하"지정계좌"라 합니다)에서 출금하여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2조(자동이체 처리절차)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 절차에 의하여 출금 (지정계좌가 대출 가능한 계좌인 경우 그 약정한도 내에서)처리되며, 금융기관의 출금마감시간 내에 입금된 금액(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하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제3조(지정계좌의 잔액부족시 출금방법)

카드사는 이용대금 결제일 현재 지정계좌의 잔액(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 부족으로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제일 이후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출금일에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2조의 방법에 따라 출금하여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4조(출금우선순위)

이체 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자동이체신청의 지정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5조(이의제기)

자동이체 납부의 신규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회사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원과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합니다.

제6조(기타)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상관례,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에 따릅니다.